

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8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06.7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, 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제명이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으로,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된 사항을 관계 조항에 반영 함(안 제1조, 제11조).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함.

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4조가 제21조로, 제24조가 제31조로 개정됨(안 제5조, 제7조, 제9조)

다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(현행 제4조, 제5조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2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6. 04. 11. ~ 2016. 5. 02. (22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불임 1 >

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및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제24조”를 “제31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14조”를 “제21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3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토지정보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토지정보과 박 병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공간정보계장 서 종 원
	담당자 성명·전화	서 종 원 (행정 2438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산시 관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및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제4조(공간정보 정책수립) ① 시장은 「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	〈삭제〉
제5조(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) ① 시장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계획을 총괄부서 사전검토 후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	제5조(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) ①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21조 〈삭제〉

현 행	개 정 안
③ (생략) ④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통합관리 체계 구축)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.	제7조(통합관리 체계 구축) 제31조
제9조(공간정보 목록작성)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·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(정보의 내용, 특징, 정확도,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. 이하 “목록정보”라 한다)를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9조(공간정보 목록작성) ① 제21조
제10조(공간정보의 제공)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「별지 제1호 서식」의 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와 「별지 제2호 서식」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10조(공간정보의 제공) <삭제> ② 법 제34조제1항

현 행	개 정 안
<p>④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「별지 제3호 서식」을 작성하고 제공된 자료를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④ 제2항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제11조(수수료)	제11조(수수료)
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정수기준은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.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정수기준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.</p>
제12조(수수료의 납부 등)	제12조(수수료의 납부 등)
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</p> <p>2. 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</p> <p>3. 유관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p> <p>4.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순수 학술연구,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에 의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